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7. 9. 1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서울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/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구조안전 11-1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

▣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〈 구조안전 분야 〉

○ 기둥부재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한 정밀하게 검토하기 바람.

○ R factor(지진력저항시스템)가 수정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.

○ 전이부재의 내진 상세 적용(특별지진하중)을 적용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하기 바람.

- TRANFER GIRDER를 지지하는 기둥의 띠철근을 D10@300에서 D10@200으로 수정하였는바, 「건축구조 기준 0520.5.4.5 불연속강성 부재를 지지하는 기둥」에 횡방향철근은 150㎜이하이어야 하고, 100㎜미만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방향 철근은 150㎜이어야 함.

○ 구조계산서의 개요를 재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기 바람.

- 근린생활시설 구조검토서
  주근 HD16이하 fy=400(SD500), HD19이상 fy=500(SD600).

○ 적용기준 및 참고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. 끝.

2017. 09. 01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